

#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 목차

	전문	-----	1
제1장	총칙	(제01조~제09조) -----	1
제2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0조~제15조) -----	1
제3장	운영위원회	(제16조~제21조) -----	2
제4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2조~제28조) -----	3
제5장	학생인권위원회	(제29조~제33조) -----	3
제6장	집행부	(제34조~제36조) -----	4
제7장	전공학생회	(제37조~제40조) -----	4
제8장	동아리연합회	(제41조~제43조) -----	4
제9장	유학생회	(제44조~제46조) -----	5
제10장	장애학생회	(제47조~제49조) -----	5
제11장	재정	(제50조~제57조) -----	6
제12장	선거	(제58조~제62조) -----	7
제13장	회칙 및 세칙	(제63조~제70조) -----	7
	부칙	-----	8

## 전문

한국성서대학교는 성서의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훈련과 진리 탐구에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주력하는 공동체이다.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는 본교 학생(성서인)의 상호간의 화합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주체적으로 제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는 성서인의 의사에 따라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성서인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운영】** 본회는 회원에 의하여 성서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하에 본회의 회칙에 의해 운영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 운영에 필요한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④ 본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및 재정, 그 밖의 본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제7조【구성】** 본회는 제2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전공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유학생회, 장애학생회로 구성한다.

**제8조【협의】**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활동제한】**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건학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제2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0조【지위 및 책임】**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 및 총괄을 맡으며, 의결 기구의 의장이 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활동 및 학습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④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임기종료 전 당선된 차기 총학생회장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12조【선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본 회칙 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선출된다.

**제13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표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투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며, 투표자 중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① 본 회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② 집행부 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속기구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임무완료시 총학생회장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⑤ 본회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본회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제15조【권한대행】**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 전까지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전공학생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16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집행부의 총괄사무국, 전공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18조【의장】**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운영위원회 중 한 명이 그 자리를 맡으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19조【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1. 정기회는 매 학기 초 1회로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업무 및 권한】** ①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제반 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승인한다.

② 총학생회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한다.

③ 학생회비 및 지원금을 사용하는 자치기구의 재정운동을 감사한다.

④ 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 당국의 본회를 대표하여 건의안을 제출한다.

**제21조【개회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자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2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기간동안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23조【권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각각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24조【의무】**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및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기 시작 직후 본회의 회원에게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제25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 등의 이유 총학생회장단의 궐위가 확실시 해졌을 때 모든 전공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후 12월 이내에 소집하여 구성한다.

**제26조【위원장단】** 운영위원회의 소속된 자로 운영위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다.

**제27조【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전원이 포함되며, 그 외의 인원은 구성원의 추천 및 공고를 통하여 의결을 거쳐 선정된 20인 이내로 한다.

**제28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임기종료 전 당선된 차기 총학생회장의 활동을 보장한다.

## 제5장 학생인권위원회

**제29조【목적】**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기간동안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30조【역할】** 학생인권위원회는 한국성서대학교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총학생회 산하의 특별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교내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회원의 의견 수렴
2.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요구
3. 학내 교육권 및 인권 현황에 대한 공유

4. 인권 관련 학생 자치활동 지원

5. 그 외 장애학생, 유학생 등 인권사항에 대한 활동

**제31조【구성】** 학생인권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을 필수로 구성하며, 본회 회원 추천 및 지원을 통해 구성한다.

**제32조【위원장】** ①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 중 한 명이 그 자리를 맡으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33조【소집】**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이 모두 선출된 후 위원장이 소집하여 정식 소집을 논하여 결정한다.

## 제6장 집행부

**제34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5조【구성】** ①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총무, 회계, 서기가 포함된 총괄사무국, 각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부장은 최대 2인의 차장을 둘 수 있다.

③ 부서의 조직은 필요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집행부의 산하 기구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단, 학교 당국의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부는 총학생회장의 동의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② 사업보고서와 예산 및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7장 전공학생회

**제37조【지위】** 각 전공학생회는 전공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38조【구성】** 각 전공학생회는 해당 전공 학과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9조【전공학생회장】** ① 각 전공학생회장은 해당 전공 학과 모든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② 각 전공학생회장은 해당 전공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학과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학생회의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명한다. 단, 전공학생회장의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부전공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업무 및 권한】** 각 전공학생회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지고 해당 학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 제8장 동아리연합회

**제41조【목적 및 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본교 학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기독교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 ① 동아리연합회는 본회의 정식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는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제42조【동아리연합회장】**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원 중에서 선출하며, 동아리장들의 동의와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모든 동아리를 대표하여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동아리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명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의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9장 유학생회

**제44조【목적 및 구성】** 유학생회는 유학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유학생회는 본회의 회원 중 유학생으로 구성한다.
- ② 유학생회는 자율적인 유학생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제45조【유학생회장】** ① 유학생회장은 유학생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유학생회장은 유학생을 대표하여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유학생의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명한다. 단, 유학생회장의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부유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업무 및 권한】** 유학생회는 유학생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

## 제10장 장애학생회

**제47조【목적 및 구성】** 장애학생회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장애학생회는 본회의 회원 중 장애학생으로 구성한다.
- ② 장애학생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제48조【장애학생회장】** 장애학생회장은 장애학생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장애학생회장은 장애학생을 대표하여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장애학생의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명한다. 단, 장애학생회장의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부장애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업무 및 권한】** 장애학생회는 장애학생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

## 제11장 재정

**제50조【원칙】** 본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1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와 그 이자, 학교 보조금,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52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본회의 예산은 2분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결산을 행한다.

③ 회계연도 제1분기는 1학기 사용자금을, 제2분기는 2학기 사용자금을 결산하며 구체적인 시간은 감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단,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비 관리는 총학생회장과 집행부 총괄사무국의 회계가 맞는다. 단, 총학생회장단의 보궐 시 학교 당국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③ 총학생회비는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4조【총학생회비 지원】** 총학생회비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 각 전공학생회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유학생회, 장애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자치기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예산】** 본회의 소속된 모든 자치기구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는 총학생회비로 지급되는 자치기구 운영금의 경우 이를 수령 가능한 자치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문제가 있을 시 해당 기구에 총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 일부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결산】** ① 본회의 소속된 모든 자치기구는 결산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본회 회원에게 공개할 의무를 진다.

② 재원을 집행하는 기구는 예산 집행 시 모든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감사위원장이 정한 통일된 양식에 따라 일체의 경비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총학생회비에서 지급되는 자치기구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자치기구 재원의 잔액은 차기연도에 이월시킨

다.

- ③ 학교 보조금은 집행 후 14일 이내에 학교 측에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각 자치기구는 학기를 종료한 후 회계연도 분기에 따라 지출 내역에 관한 감사에 응해야 한다.

**제57조【재정운영세칙】**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운영세칙에 의한다.

## 제12장 선거

**제58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59조【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피선거권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60조【선거시기】** 선거는 2학기 말부터 금기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10일 전으로 한다.

**제61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62조【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50일 이상인 경우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궐위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궐선거를 한다.

②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50일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가 각 전공 학생회장 중 1인을 추천하여 총학생회장직을 계승한다.

## 제13장 회칙 및 세칙

**제63조【발의】**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 1. 총학생회장이 발의한 경우
- 2.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연서(連署)를 통해 발의한 경우
- 3. 본회의 재적인원 1/10 이상의 연서(連署)를 통해 발의한 경우

**제64조【회칙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운영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 2. 신 · 구 조문 대비표
-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65조【회칙 개정안 의결】** ①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중 2/3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제66조【회칙정리】** 회칙에서 조항 · 자구 · 숫자 또는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단,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칙의 본 의도를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

**제67조【회칙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68조【세칙의 정의】** ①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들을 위임하여 자세하게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②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하다.

**제69조【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중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회칙 및 세칙의 해석】** 회칙 및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석하여 이를 결정한다. 또한 추후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칙에 의거하여 회칙개정을 진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때로부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